

“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경제의 틀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돈이 도는 활기찬 경제

	보 도 자 료		
	보도	2016. 12. 14.(수) 석간	배포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장준경 국장(3145-7580), 박정태 팀장(3145-7600)	

제 목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 가이드라인」 마련
-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 증거금 교환 제도를 도입 -

1 추진 배경

□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G20 각 국은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리스크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제 도입* 및 감독 강화에 합의

* ①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②중앙청산소(CCP) 청산 의무화, ③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 부과, ④전자거래플랫폼(ETP) 도입 등

○ 이에 '15.3월 BCBS/IOSCO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증거금(담보)를 의무적으로 징수·제공(교환)하는 제도에 대한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각 국가별 시장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권고

* Margin Requirements for non-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 우리나라도 국제기준의 국내 이행과 국내 장외파생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증거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로 구성된 실무협의회(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 예탁결제원 은행금투협회, 은행(외은지점), 증권사 등 20개의 기관이 참여('16.8~11월)

○ 해외 주요 국가의 도입사례,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증거금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 금융위, 금감원 등이 발표한 '파생시장 경쟁력 제고 방안'(16.11.23.)의 일환으로 추진

2 주요 내용

- **(기본 개념)**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를 사전에 교환하고, 손실 발생시 징수한 담보로 손실을 보전
 -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임
 - ☞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시스템리스크를 축소
- **(대상 기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등 장외파생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및 집합투자기구
 - ☞ 일반 회사 및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은 제외
- **(대상 상품)** 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
 - ☞ 실물로 결제(physically settled)되는 외환(FX)선도·스왑 및 통화스왑(CRS)은 신용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제외
- **(세부 기준)** 대부분 BCBS/IOSCO 기준에 부합*하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
 - * BCBS/IOSCO는 국가별 규제차이로 인한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 해소를 위해 국제기준과 유사한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

증거금 제도의 주요 내용(요약)

목적	파생상품 거래의 시장가치 변동에 따른 일일 익스포저 관리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 미래의 잠재된 위험에 대비
구분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기본 개념	<p>A → 담보(현금 등) → B 평가손실 발생 평가이익 발생</p>	<p>담보(현금 등) → 보관기관 ← 담보(현금 등) A ↔ 계약 체결 ↔ B</p>
교환시기	매일	거래 개시 시점
계산	시가 평가	표준모형 또는 내부계량모형
교환방식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총액 교환(상계X)
면제한도	없음	최대 650억
담보관리	개별관리	제3의 보관기관
담보 재사용	재사용 가능	재사용 금지
적용시기	'17.3월(잔액 10조 이상)	'20.9월(잔액 10조 이상)

□ **(적용 일정)** 거래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변동증거금은 '17.3.1., 개시증거금은 '20.9.1.* 각각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일부 장외파생거래 규모가 큰 글로벌 IB의 국내지점(외은지점) 등 외국계금융회사는 '17.9.1부터 개시증거금 제도가 적용되나, 국내 금융회사는 '20.9.1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

증거금 제도 적용 일정

구분	시행일	대 상
변동 증거금	'17.3.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17.9.1~	모든 대상 기관
개시 증거금	'17.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18.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2,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19.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0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20.9.1~	非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 기관

※ 개시·변동증거금 모두 거래당사자 쌍방이 증거금 제도 적용 대상일 경우에만 교환

3 기대 효과

① **(장외파생거래 리스크 관리 강화)** 금리 등 대외변수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CCP 청산을 유도*함으로써 장외파생시장의 리스크를 축소

* 증거금 교환 비용이 CCP 청산비용 보다 높아 CCP 청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② **(국내 장외파생시장의 대외 신뢰도 제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장외파생시장에 대한 신뢰도 제고

4 향후 계획

□ 행정지도 사전예고 및 의견청취('16.12월중) 후 시행('17.3.1.)

- 행정지도 시행 이후 증거금 제도에 대한 금융회사의 이해도 제고 및 담보교환에 따른 계약서 작성 등을 위한 3개월의 준비기간을 별도로 허용할 방침임

※ 「증거금 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감독원 홈페이지(법규정보-금융행정지도) 참고